

2019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1. 자치법

【1】제1조(명칭)

우리 연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라 한다.

【2】제2조(미주자치연회 자치법)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칭한다)의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주자치연회의 현실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정한다.

- ① 자치법은 장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감리회의 장정을 준용한다. (신설)

【3】제3조(자치법의 개정)

- ① 자치법의 개정은 자치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주자치연회입법의회(이하 미주입법의회라 칭한다)에 상정하고 미주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② 현장발의는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자치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 ③ 감독은 의결된 개정안을 30일 이내에 공포한다. 단, 30일 이내에 감독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법개정위원장이 공포한다.

【4】제4조(자치법개정위원회) 자치법개정위원회는 자치법개정안, 시행세칙, 내규 등을 심의하여 개정안은 미주입법의회에, 시행세칙 및 내규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 발의한다. (개정)

- ① 위원회에서 제안된 자치법 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감독이 공고하고 연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 ③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시행세칙 및 내규는 감독에게 보고 후 첫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발의한다. (신설)

2. 조직과 행정법

【5】제1조(의회조직 및 위원회의 구성) 미주자치연회의 모든 의회 조직 및 위원회의 구성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연회 참석자의 비율로 구성하되 여성 및 연하자 배려의 원칙에 대하여 미주자치연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단, 모든 위원회는 양 교구 동수로 구성한다. (개정)

【6】제2조(교구) 미주자치연회는 동부교구와 서부교구로 조직한다.

【7】제3조(감독) 미주자치연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을 둔다.

- ① 감독은 미주자치연회를 대표하는 최고 영적 지도자이다.
-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8】제4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 ① 감독의 자격은 정회원 20년을 마친 이 중 미주자치연회에서 계속하여 10년 이상 시무하고 해당국가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개정)

- ② 연회의 표준정관(By Law)을 개체교회의 정관으로 등록한 회원이어야 한다.
- ③ 감독은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 이어야 한다. 단 자립교회 기준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감독은 연회에서 선출한다.
- ⑤ 감독은 간선제로 선출하며 선거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 ⑥ 감독은 자치법의 선거법에 따라 선출하고, 감독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감독 당선자는 당연직 연회실행부위원이 된다. (개정)

【9】제5조(감독의 임기)

- ① 감독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며 연임하거나 재임할 수 없다. 단, 궐위 시 보선된 감독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 ② 감독이 궐위 되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 중 연급,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권자가 되어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즉시 감독을 보선한다. (개정)
- ③ 감독이 유고되었을 때는 제 5 조 2항의 방법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신설)

【10】제6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감리회 장정에 준하되 미주자치연회와 관계되는 사항은 자치법으로 정한다.

- ① 감독은 연회의 최고 임원으로서 미주자치연회를 대표하며, 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교역자 선출직 총회실행부위원은 감독을 선출하지 않은 교구에서 선출한다.
- ② 감독은 연회를 분산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 ③ 감독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④ 감독은 차기 감독당선자와 협의하여 연회총무 후보를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추천한다.
- ⑤ 감독은 개체교회 및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 받은 기관, 단체 등에 파송권을 가진다.
- ⑥ 감독은 교회 내 재산권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교회 및 재산권의 보호, 유지를 위한 행정 조치의 의무를 가진다.

【11】제7조(연회실행부위원회) 연회가 닫힌 후 연회에서 위임한 사안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안건 및 양 교구 간의 원활한 협력을 심의하기 위하여 2년 임기의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개정)

- ① 연회실행부위원회는 위원 과반의 요청이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소집한다. (개정)
- ② 연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 외 교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각 7인씩 총 1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 ③ 연회총무 및 감사 2인, 연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언권위원이 된다.

【12】제8조(연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장정 상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에서 교구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제외한 연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 ① 연회 내규 및 시행세칙을 심의, 의결하고 소속기관 및 위원회의 정관을 인준한다. (개정)
- ② 부담금을 장기간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미납할 경우에는 사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3】제9조(연회본부의 설치) 미주자치연회의 행정을 지원하는 연회본부를 둔다.

- ① 연회본부는 감독이 정한다.
- ② 연회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본부'로 호칭한다.

【14】제10조(연회본부의 조직) 연회본부는 본부와의 연락과 연회의 행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무급의 임원을 둔다. (개정)

- ① 감독 1인
- ② 총무 1인

【15】제11조(연회총무) 연회총무는 감독의 지휘를 받아 본부와 연회의 행정 전반을 관할하며 교구 간사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6】제12조(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총무의 자격은 정회원 12년을 마친 이 중 미주자치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45세 이상이 된 이로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17】제13조(연회 총무의 임기) 연회 총무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8】제14조(연회 총무의 선출) 연회 총무는 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하고,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보선의 경우는 감독이 후보를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추천하여 재석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한다. 단, 권위 시 보선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19】제15조(연회 총무의 직무) 연회 총무의 직무는 감리회 장정에 준하고 미주자치연회의 특성에 관계되는 사항은 자치법에 따르되 기타 직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제16조(교구 간사)

- ① 교구 간사는 정회원 11년을 마친 이 중 미주자치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이로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 ② 교구 간사는 교구별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③ 교구 간사는 각 교구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1】제17조(감리사의 자격)

- ① 연회의 표준정관을 개체교회의 정관으로 등록한 구역의 회원이어야 한다.
- ② 소속교회가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가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않거나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교회, 최근 4년간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교역자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③ 감리사를 역임하지 않은 이를 우선으로 선출한다.

【22】제21조(부교역자의 파송제한) 부담임 교역자를 파송할 수 있는 개체교회는 일반회계 소계 7만불 이상일 때 1명을 파송할 수 있으며 추가 될 경우에는 각 1명당 일반회계 결산 3만불 이상 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3】제22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소속)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된 입교인이 6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체교회는 반드시 지방회와 교구에 소속해야 한다.

【24】제23조(개체교회의 교단탈퇴 및 처리) (개정)

① 교단탈퇴에 관한 정기구역회는 감리사가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신설)

② 교단탈퇴는 정기구역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더하여 연회에 동산 및 부동산의 위임 문서를 공증하여 제출함으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③ 부동산의 포기 문서는 변호사가 작성하여 공증을 마쳐야 한다. (신설)

④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은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된다. (개정)

⑤ 교단탈퇴를 결의한 당시의 교역자 및 구역회원에 대해서는 감독이 직권으로 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한다. (개정)

⑥ 교단탈퇴를 반대한 교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감독이 감리사와 논의하여 후임자를 파송한다. (개정)

【25】제24조(개인의 교단 탈퇴 및 처리) (신설)

① 교역자의 교단탈퇴 시에는 감독 직권으로 면직한다. (신설)

② 장로의 교단탈퇴 시에는 해당지방 감리사가 감독에게 보고 후 감리사 직권으로 면직한다. (신설)

③ 권사 및 집사의 교단탈퇴 시에는 담임목사가 감리사에게 보고 후 담임목사가 직권 면직한다. (신설)

④ 교단 탈퇴 후 복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의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의회의 장이 복권시킬 수 있다. (개정)

3. 의회법

【26】제1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개정)

① 기획위원으로 재단이사회(Board of Trustee)를 구성하며 담임목사는 재단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기획위원은 개체교회 재단이사(Church Board Member)를 겸한다. (개정)

③ 기획위원회는 교역자와 장로로 구성한다. 단, 5인 이하일 경우 5인까지 권사로 충원할 수 있다.

【27】제2조(구역의 교구이동)

① 교구제 시행 시 당회에서 소속교구를 결의한다. (신설)

② 교구제 시행 후 교구 이동을 원할 때에는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감독의 인준을 받아 교구를 이동할 수 있다. (개정)

【28】제3조(지방회의 조직)

- ① 지방회는 반드시 15개 이상의 구역으로 조직하며 연회는 총 14개 이내의 지방회로 구성한다. (개정)
- 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지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 ③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교역자 혹은 평신도 중 지방회의 자율로 결정하여 임명한다.

【29】제4조(교구 운영위원회)

- ① 교구운영위원회는 교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독, 감리사를 포함한 총 10인 이내의 교구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교구 소속 연회실행위원은 언권위원이 된다. (신설)
- ② 감독은 교구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 ③ 교구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기 및 감사 각 1인을 선출한다. (신설)
- ④ 감독의 명을 받아 교구의 행정, 사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 ⑤ 교구운영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소집한다. (신설)

【30】제5조(교구 운영위원회의 직무)

- ① 교구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연회 내규로 정한다. ② 각 교구 운영위원회에서는 7인 이내 동수의 연회실행부위원을 선출한다.
- ③ 미주입법의회 및 연회분과위원회에 대한 동수의 공천을 한다.

【31】제6조(연회의 조직)

- ①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각 지방에서 장로 권사 순으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 선교회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 ② 교회경제법에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 ③ 준회원, 협동회원, 선교회원 및 타교단과 타교파에 파송된 회원은 발언권만 가지며 결의권은 없다. (개정)
- ④ 회원권이 없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당해년도 진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32】제7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집한다. 단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분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33】제8조(연회 분과위원회) 연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고 연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조직한다.

- ①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건의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행정조정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재판위원회, 특별재판위원회를 상임으로 운용한다.
- ②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재정위원회, 지방회의 록조사위원회, 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 투표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 운용한다.
- ③ 각 위원회의 인원구성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각 상임분과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1/2 씩 선출한다.

【34】제9조(연회파송이사) 연회는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에 10명 이내로 재단이사를 파송하며 감독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5】제10조(연회 특별위원회) 미주자치연회 안에 자치법개정위원회, 목사고시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 은급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기관목회위원회를 둔다. (개정)

① 자치법개정위원회는 자치법 개정안과 시행세칙을 심의하여 미주입법의회에, 연회내규를 심의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② 목사고시위원회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세부지침은 과정법에 따른다.

③ 유지재단이사회의 조직과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이사회의 정관에 따른다.

④ 은급위원회는 연회의 은급방안을 연구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⑤ 대외협력위원회는 대외협력사업을 연구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⑥ 기관목회위원회는 2세목회(EM), 군목, 원목, 교목 등의 기관파송 목회자에 대한 수급과 훈련 및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⑦ 특별위원은 양 교구 동수의 인원으로 조직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1/2씩 선출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36】제11조(미주입법의회) 미주입법의회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대한 입법업무를 전담한다.

① 미주입법의회는 감리회의 입법의회가 개최되는 해의 연회 전에 감독이 소집하고, 감독은 미주입법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미주입법위원회의 조직은 당연직 대표와 양 교구에 각각 선출된 20명씩의 선출직 대표들로 조직한다. (개정)

③ 감독, 연회총무, 연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직권상 당연직 대표가 된다.

④ 선출직 대표 중에는 여성 대표 2인 이상, 40대 미만 대표 2인 이상, 평신도 대표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37】제12조(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① 지방회 및 연회, 미주입법위원회의 회원권자는 각종 부담금을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완납한 구역의 회원으로 한다. 완납이라 함은 과거 미납된 부담금이 전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지방회, 연회의 개회 성원은 등록 후 출석한 이로 하며 개회 성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③ 미주입법위원회의 개회 성원은 재적의 2/3 출석으로 하며 출석의 과반으로 의결한다. (신설)

④ 입법의회, 연회, 지방회, 구역회, 구역인사위원회, 당회, 임원회를 제외한 회의는 온라인으로 소집, 진행할 수 있다. (신설)

4. 교회 경제법

【38】제1조(부담금의 납입)

① 각종 부담금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완납(소인기준)하여야 하며 각종 부담금을 완

납하지 않은 구역의 교역자의 인사이동을 제한한다.(개정)

② 지방부담금은 지방회에, 그 외 모든 부담금은 교구별로 수납하여 본부 및 은급부와 대체 처리한다. (신설)

【39】제3조(유지재단이사회의 조직 및 직무)

① 유지재단이사회는 개체 구역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록한 교회의 회원을 이사로 하여 13명 이내로 조직한다. 단, 감독이 이사장이 된다.

② 유지재단이사회는 연회 및 개체 구역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40】제4조(유지재단 등록 의무) (신설)

① 미주자치연회의 소속교회는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②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것은 개체교회 부동산의 소유권을 연회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단 부동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③ 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의 교역자는 진급 및 파송의 제한을 받는다. (신설)

④ 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각종 의회의 임원이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5. 재판법

【41】제1조(심사 및 재판)

① 미주자치연회의 교역자 및 교인의 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와 연회특별재판위원회의 2심제로 한다. (개정)

② 행정조정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도 이를 준용한다.

【42】제2조 (개체교회의 교단탈퇴에 따른 별칙의 적용) (신설)

① 개체교회의 교단탈퇴를 결의한 당시의 담임자는 면직한다. 담임자 이외의 교역자 및 구역회원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한다. (신설)

6. 선거법

【43】제1조(감독의 선거) 미주자치연회는 감독선거의 과열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를 시행한다. (개정)

① 감독의 선거는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후보 중에서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개정)

② 선거인단은 연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정회원과 평신도 중 양 교구가 동수로 20명씩을 추첨하여 선출하는 즉시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③ 당선은 과반 득표자로 하되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2인에 대하여 재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로, 동수 일 경우에는 연급, 연장의 순으로 결정하며 단일 후보의 경우는 투표 없이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에 대한 세부진행방법은 연회내규로 정한다. (개정)

【44】제2조(감독회장의 선거) 감독회장 선거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실시한다.

① 감독회장 선거는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연회선거관리위원장이 총

회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 감독회장 선거는 총회 선관위와 협의하여 우편투표로 실시한다.

【45】제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별로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하며 2년의 임기로 한다. (개정)

② 감독이 소집하여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선거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연회 내규로 정한다. (개정)

7. 경계법

【46】제1조(미주자치연회의 경계) 미주자치연회의 경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① 미주자치연회의 경계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하며 그 외 중남미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안에는 감리회의 선교연회, 혹은 타연회의 지방회, 개체교회를 둘 수 없다. 단, 2015년 제23회 미주특별연회 당시 캐나다중앙지방에 소속되었던 교회들만은 예외로 한다.

② 미주자치연회의 지방의 경계는 14개 이내의 지방회로 구성하며 각 지방회의 명칭은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8. 과정법

【47】제1조(정회원 및 평신도 연수교육) (신설)

① 미주자치연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수원의 주요기능을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미주감신)에서 담당한다. (신설)

② 모든 정회원은 미주감신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연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③ 장로 진급과정에 있는 평신도들은 미주감신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④ 기타 세부사항은 연회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48】제2조(감리회 필수과목 수강) (신설)

① 타교단, 타교파로부터 이명해 온 교역자나 장로는 미주감신에서 감리회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② 준회원 진급과정의 필수과목의 수강 및 시행에 관해서는 과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주감신에서 수강할 수 있다. (신설)

【49】제1조(한국어 목회자 과정)

① 개체교회를 담임하지 않은 전도사는 지방회의 서리 과정을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한 후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② 대상자는 소속교회의 일반회계 소계가 7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연봉이 일만 이천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서리 및 준회원의 진급은 전임목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 내규로 정한다. (신설)

【50】제2조(현지어 목회자 과정) 제2조(현지어 목회자 과정)

① 미주자치연회에서는 현지어목회자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한 특별과정을 둔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 내규로 정한다. (신설)

【51】제3조(목사고시위원회 조직) 목사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 ① 목사고시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위원으로 조직한다.
- ② 목사고시위원회는 연회 과정위원으로 구성한다.

【52】제4조(목사고시위원회 직무) 목사고시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해당자의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관장한다.
- ② 3년간 담임목회를 하는 경우에는 목사고시 응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53】제5조(타교단으로부터 이명) 타교단으로부터의 이명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시행한다.

- ① UMC 정회원으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목회연한의 100% 까지 산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 ② 연회가 인정하는 타 교단, 타 교파로부터 이명증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최대 목회연한의 70% 까지 산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 ③ 이명증서가 없거나 기타 연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54】제6조(타교파, 타교단으로의 파송) 타교파, 타교단으로의 파송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시행한다.

- ① 타교파 혹은 타교단으로 파송 시에는 소속교회가 있어야 하며 지방회와 연회에 반드시 등록하여 사역을 보고해야 한다.
- ② 타교파 혹은 타교단으로 파송 시에는 소속 지방회와 연회에 매년 행정지원금을 납부하되 행정지원금의 액수는 연회내규로 정한다. (신설)
- ③ 타교파 혹은 타교단으로 파송 시에는 지방회 및 연회에서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개정)

【55】제7조(기관 파송) 기관파송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시행한다.

- ① 파송 기관은 기관목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 ② 기관 파송을 받는 이에 대한 자격, 과정 및 진급은 과정 자격위원회에서 다룬다.
- ③ 기관 파송을 받는 이는 소속교회가 있어야 하고 해당기관에서 연봉이 일만 이천 달러(U\$) 이상이어야 하고 연회에 사역을 보고해야 자격이 유지되며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개정)
- ④ 연회에서 은퇴한 교역자는 연회의 모든 인준기관에서도 은퇴하여야 한다.

【56】제8조(선교사의 파송) 선교사의 파송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시행한다.

- ① 선교사의 파송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인준한다.
- ② 선교사 후보자는 미주선교훈련원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들의 과정, 자격 및 진급은 과정, 자격위원회에서 다룬다. (개정)
- ③ 선교사는 소속교회와 연 일만 이천 달러(U\$) 이상의 후원약정서가 있어야 하고 연회에 의무적으로 선교보고를 하며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 ④ 평신도 선교사(전문직 선교사)는 미주선교훈련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연회 인준 평신도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

【57】제9조(교역자의 은퇴) (신설)

- ① 모든 은퇴자(정년은퇴, 자원은퇴, 공상은퇴)는 모든 부담금을 완납하고 자격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은퇴한다. (신설)

9. 정관, 규정, 규칙

【58】제1조(구역 재단이사회의 정관) 개체 구역 재단이사회(Board of Trustee)의 정관은 유지재단이사회에서 별도의 표준정관(By Law)을 제정하여 보급하며 교육과 대체작업을 안내한다.

【59】제2조(연회 내규) 연회 내규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한다.

10. 부 칙

부칙(2016. 4. 28.)

【60】제1조(시행일) 이 법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최종 결의를 거쳐 감독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29.)

【6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2】제2조(경과조치) 교구제 시행과 연관된 모든 법은 2020년 감독취임 직후부터 시행한다.

【63】제3조(경과조치) 34회 총회에 해당하는 감독은 본 개정안에 의하여 2020년도에 개최되는 연회에서 선출한다.

【64】제4조(경과조치) 2018년 제26회 연회 후 선출된 연회 총무와 간사의 임기는 33회 총회 감독 퇴임 시까지이다.

【65】제5조(경과조치) 지방경계는 2020년 제28회 연회에서 지방경계조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되 2021년 2월에 조직지방회로 모이고 제 29회 연회에서부터 시행한다.

2019년 1월 29일

미주자치연회

감독 은희곤

자치법개정위원회

위원장 : 이철윤, 서기 : 허 장

위원 : 김영민, 정동광 이용걸, 권덕이, 김영무, 한 욱